

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관리민간위탁동의안

검 토 보 고

이 조례안은 2003년 5월1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
2003년 5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

1. 제안이유

- 청사 내 부설 주차장 유료화는 수익목적 사업보다는 청내의 고질적인 주차문제 해결 및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함.

2. 주요골자

- 파주시청 부설주차장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함.

3. 검토의견

- 동 동의안은 청내의 고질적인 주차문제 해결과 민원인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청사내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계획에 따라 주차장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주차장운영을 민간에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의회의 동의를 득 하고자 하는 것임.
-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및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 제7조,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와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주차장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.
- 또한, 지난 제69회 임시회 시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 제정을 통해 주차장유료화에 따른 주차장운영 방법, 주차요금등 관리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된바 있어 민간 위탁이 충분히 가능한 사항임.
- 그러나, 주차장 유료화에 따라 시행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대안마련을 위해 당분간이라도 직영방법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직접운영 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- 직접운영방식의 경우 주차장 운영관리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응과 합리적인 방안모색이 가능하나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별도인력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,
-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방식의 경우 주차장관리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경영합리화에 따른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참고적으로 도내 청사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있는 시·군은 수원시 등 10개 시·군이며 이 중 수원시 등 5개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고양시 등 5개시는 직영방식으로 운영하고있는 실정임.

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

- 제7조(위탁관리)** ①시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파주시 주차장설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관리할 수 있다.
- ②제1항에 의해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.

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

-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**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

제6조(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) ①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 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(이하“관리수탁자”라 한다)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하는 법인
2.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과 사회단체